

인천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단2715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26.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7. 21. 접수 제2643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은 C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557)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5. 7. "C은 E에 33,279,186원과 그중 31,339,041원에 대하여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E의 C에 대한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6. 20. 위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C의 모친인 망 F(이하 '망인')은 2016. 8. 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G, C, H이 있다(각 상속지분 1/4).

라.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6. 8.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의 C에 대한 채권(33,279,186원과 그중 31,339,0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수하였고, 원고의 양수금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위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이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은 그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제공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여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 부친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채무를 망인이

승계하였으나, 실제로는 장남인 피고가 2000년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하였고 현재까지 대위변제한 금액이 200,000,000원에 이른다. 이렇듯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데 기여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부친인 J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에 관하여 K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2009. 6. 1.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인수한 사실, 피고가 2017. 7.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2020. 12. 1.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이후에 대출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을 제2호증의 1~5(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에는 망인의 대출원리금 변제내역만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변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을 제3호증의 1~3(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 생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양수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과 형제 사이로 인접한 곳에 거주하면서 C의 경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거나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봉지수